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도시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등을, 제2장에서는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 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 행위제한,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원상회복등을 정하고 있고, 제3장은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의 관리, 손괴가로수의 변상금, 민간위탁관리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제2장의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가 대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토록 하고 시장은 훼손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제3장의 가로수 식재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손괴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와 시민관리제와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규정 (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 검토사항

- 동 조례는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의 가로수 식재관리를 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체계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내용면에서도 제2장에서 조경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의무, 관리자의 행위 제한등을 정하고, 제3장에서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를 정하고 있고 손괴시 구체적인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
- 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